

1. 개정이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검증의 방법, 직권말소의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신설(안 제31조의2)

-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매체가 구인광고의 주된 게재 수단이 되었으나,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는 규율 공백 상태로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함.

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의 직권말소 절차 신설(안 제41조의6)

- 1) 폐업 미신고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권말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사실 확인, 사업소 유지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신고·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다.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신설(안 제44조의3)

- 1) 온라인 구인·구직 확산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사업자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

- 1)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2) 위반행위에 따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준수 사항)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이던 것을 경고로 하향 조정하고, 법 제23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 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41조의6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모니터링 및 검증) ①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그 내용이 허위·과장인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게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해당 구인자 명의의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중지 또는 삭제 명령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구인자가 게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구직자 등으로부터 해당 구인자 명의의 구인광고에 대한 거짓 구인광고 신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 수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아 허위·과장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허위·과장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게재된 구인광고가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에 비추어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증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
2. 구인자가 제출한 채용계획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구인자와 유선통화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
4. 그 밖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보유한 정보

④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검증 및 제2항의 모니터링 결과 구인광고가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인자에게 구인광고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구인광고의 게시를 중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제41조의6(폐업 사실 확인 및 직권말소)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여부
2. 사업소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3. 직업정보제공 매체의 운영 여부(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신고·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협회
 4. 그 밖에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2) 법 제25조(준수 사항)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시행령 제28조제6호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시행령 제28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내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	-----	-----	------	-----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임원 성명		⑥ 임원 주민등록번호	
⑦ 사업소 소재지			
⑧-1 일반전화번호		⑧-2 휴대전화번호	
⑧-3 팩스번호		⑨ 직업상담원	
⑧-4 이메일주소			
⑩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⑪ 사무실 전용면적			
⑫ 주 소개직종	1) 2) 3)		
⑬ 사업소 종사자 수			
⑭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해당(홈페이지주소 :) [] 비해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4. ⑦ 직업상담원란은 신고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소에 자격있는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의 ① ~ ⑩란 등 신고서의 작성은 사업소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	-----	-----	------	-----

신청인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임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번호 *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업상담원		
	사업소	동산	원
	자산상황	부동산	원
	사무실 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 분류코드)	1)	()
		2)	()
		3)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해당(홈페이지주소)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으 로 한정한다) : 3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다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 신청서는 사업소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종 사 자 명 부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도 이 서식에 적습니다.

직책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담당 업무	학력	주요 경력	채용연 월 일	해임연 월 일	자격증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첨부서류	1.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1부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 소재지의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정보제공수단난란에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이나 유·무선방송, 홈페이지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표시합니다.
2. 정보제공매체의 명칭난란에는 간행물의 경우에는 그 간행물의 명칭, 유·무선 방송 등의 경우에는 그 방송명 등을 적습니다.
3. 주 정보제공직종난란에는 해당 업체에서 주로 공급하는 직종을 적습니다.
4. 제공지역난란에는 간행물의 경우에는 그 보급지역, 유·무선방송의 경우에는 그 수신가능지역을 적습니다.
5. 주된 제공대상난란에는 대학생, 여성, 일반구직자등 직업정보제공의 주된 대상을 표시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신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사업체	명칭	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계획	국내	월간	명	연간	명	
	국외	월간	개국	명	연간	개국
공급대상 사업체 수						
개소						
업무구역(국내)						
지사설치 (국외)	지역	일자				

「직업안정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규 허가신청서 (각 1부)	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자산상황서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며, 이 서류는 허가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없음
	연장 허가신청서 (각 1부)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허가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1조의2(모니터링 및 검증) ①</u> <u>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u> <u>따라 해당 구인광고를 게재하거</u> <u>나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그</u> <u>내용이 허위·과장인지 여부를</u> <u>검증하여야 한다.</u> <u>1. 구인자가 게재 신청일 전 6개</u> <u>월 이내에 법 제34조의3에 따</u> <u>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u> <u>해당 구인자 명의의 구인광고</u> <u>에 대한 수정, 게시중지 또는</u> <u>삭제 명령을 통보받은 사실이</u> <u>있는 경우</u> <u>2. 구인자가 게재 신청일 전 6개</u> <u>월 이내에 구직자 등으로부터</u> <u>해당 구인자 명의의 구인광고</u> <u>에 대한 거짓 구인광고 신고</u> <u>를 받아, 검토한 결과 허위·</u> <u>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u> <u>사실이 있는 경우</u> <u>3.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 수</u> <u>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u> <u>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과 비</u> <u>교하여 현저히 높아 허위·과</u> <u>장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u>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허위·과장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게재된 구인광고가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에 비추어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증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

2. 구인자가 제출한 채용계획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구인자와 유선통화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

4. 그 밖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보유한 정보

④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검증 및 제2항의 모니터링

<신 설>

결과 구인광고가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인자에게 구인광고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구인광고의 게시를 중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제41조의6(폐업 사실 확인 및 직권말소)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여부
2. 사업소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3. 직업정보제공 매체의 운영 여부(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신고·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신 설>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협회

4. 그 밖에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